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1
----------	------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양은숙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표지판의 설치조건 및 표지판의 종류·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공사·시설·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표지판의 설치장소, 비용,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법인·단체(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조성·지원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의 내·외부에 설치한 제5조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명칭
2.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공사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시설상징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소나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그 지원·운영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그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위치,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운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보조금이 교부되는 보조금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4.11. 일부개정 2023.10.12 시행)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2023.8.8. 타법개정, 2024.5.17. 시행)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